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10. 29(금)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0. 10. 8
-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 다. 회부일자 : 2010. 10. 11
- 라. 상정일자 : 2010. 10. 27 (제188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정태옥 기획관리실장
 - 검토보고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시 실정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나. 주요내용

-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도록 함.(안 제2조)
-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변경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의회 보고 후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며,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토록 함.(안 제4조, 제5조)

-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며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행·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며 녹색생활 실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함.(안 제7조)
-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둬.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동 조례안은

- 전 세계적인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수도 Green 인천 건설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시 차원의 녹색성장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4조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절차”를 보면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변경 시에는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후 시의회에 보고하고 중앙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확정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 “추진상황 점검·평가”에서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매년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음
- 안 제8조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심의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해 50명 이내의 위원과 행정부시장과 민

간위원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등 2명의 위원장을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 안 제8조 제2항의 녹색성장위원회 구성과 관련 50명이내의 위원과 복수의 위원장을 두고 있는 사유와
- 안 제8조, 안 제10조와 관련하여 분과위원회 구성계획 및 운영방법과 위원 5명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사유와 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실현을 위한 좀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신동수, 전원기 위원
 -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 위원회 위원 구성(50명) 필요성
 - 타시도와의 평가결과 이행정도

< 답 변 >

- 정태욱 기획관리실장, 박준용 정책기획관
 - 연 3,000만원 정도 예산 소요
 - 기후변화 등 유사한 조례를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위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각 시도 국가사무이기때문 평가결과는 비슷함.

5. 토론요지

- 가. 찬 성 : 홍성욱, 신동수, 이재병, 전원기, 차준택, 허회숙 위원
-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 6명)

7.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른 조례에 의해 수립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은 제4조에 따른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절차)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추진계획

4.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군·구와 연계한 녹색성장 추진체계

6.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7.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상황 점검·평가)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9조 제1항에 따라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검·평가의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시 본청의 실·국·본부, 기관의 장이 3급 이상인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 연관이 있는 기관을 점검·평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점검·평가의 대상업무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 등이 된다.

④ 시장은 녹색성장 추진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점검·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점검·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에너지·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2.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3. 지역녹색산업의 육성·지원
4.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인천센터 활성화

③ 시장은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녹색생활 실천) ① 시장은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실천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실천과 관련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야 하며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우수 단체 및 시민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 제15조에 따라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1.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수당·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